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3가단53308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배은서, 이상윤

피고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별

담당변호사 김범기

변론 종결2024. 11. 5.

판결 선고2024. 11. 26.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3,734,216원 및 그 중 13,217,062원에 대하여는 2023. 8. 9.부터, 20,268,804원에 대하여는 2023. 8. 17.부터 각 2023. 9. 15.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22. 9.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2020. 12. 10. C 주식회사(이하 'C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25. 12. 9.로 정하여, 2022. 9. 1.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27. 9. 1.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원고가 발행한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은행과 D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③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 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022. 1. 1.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8%이다.

다. 피고들은 1991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지내왔고, 피고 A는 2019. 11.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들은 2022.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2022. 11. 29. 그 의사를 확인함에 따라 협의이혼 하였다. 그런데, 피고 A는 그보다 전인 2022. 9. 29.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B에게 이전하는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피고 A는 2022. 9. 14.경 C은행과 D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3. 8. 9. C은행에 대출원리금 13,217,062원(= 원금 13,073,336원 + 이자 143,726원)을, 2023. 8. 17. D은행에 대출원리금 20,268,804원(= 원금 20,000,000원 + 이자 268,804원)을 각 대위변제하였으며, 위 각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비용으로 248,35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구상금 합계 33,734,216원[= (대위변제금 13,217,062원 + 20,268,804원) + 가지급금 248,35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3,217,062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3. 8. 9.부터, 대위변제금 20,268,804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3. 8. 17.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날인 2023. 9. 1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피고 B와 사이에 가장이혼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들 사이 재산분할비율은 1:1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가 피고 A로부터 자신의 정당한 몫인 1/2 지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이전받은 것은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중 1/2 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피고 B는

채무자인 피고 A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 사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대상이고, 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와 협의이혼 당시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 내의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합계 33,734,216원의 구상금 채권이 늦어도 2023. 8. 17.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2020. 12. 10. 및 2022. 9. 1. 체결되어 있었고,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2023. 8. 9. C은행에, 같은 달 17. D은행에 각 대위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피고 A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 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참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들 사이의 협의이혼이 성립한 2022. 11. 29. 이전인 2022. 9. 29.에 체결되었으나, 그 기간이 2개월 차이에 불과하고, 실제 피고들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날은 2022. 10. 26.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였는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와 그 이행은 이혼 전뿐만 아니라 이혼 후에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주장대로 일응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위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서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위 법리를 고려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더해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7, 8호증, 을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 주소지가 같은 등 피고들이 한 협의이혼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참조), 피고들은 약 30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가 협의이혼한 자들로서 그 이혼 이후에도 동거 또는 왕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적정한 범위의 재산분할액은 79,915,109원¹⁾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3억 1,000만원으로 보고 산정한 것인데, 위 3억 1,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호가(2024. 5. 23.경)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어서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을 가능성이 큰 점, ③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인 2022. 11. 29.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 2022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²⁾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주장의 위 적정 재산분할액은 적절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 B는 2019. 11. 25. 본인 연금 해약금 23,367,623원 및 본인 자금을 통해 26,000,000원을 피고 A에게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 A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피고 B의 기여가 적지 않고,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한다고 하여 특별히 피고 B가 과도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바,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재산분할 명목)이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창우

별지

1) 2024. 10. 4.자 준비서면 참조

2) 물론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 호가가 적정하게 책정된 가액이라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거래 사례가 많지 않은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